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9조제3항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한다.
- 제9조제3항제1호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를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반환" 으로 한다.
- 제9조제3항제2호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를 "국가적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으로 한다.
- 제9조제3항제3호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승인신청을 취소하거나 구청 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 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으로 한다.

별표 1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원길 11"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 당로8길 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및 기능
사당문화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목적 강당, 문화교실, 수영장, 체력
	사당로8길 9)	단련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9조) 나. 새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새주소 정정 (제3조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기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